



수술 후 불가피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사례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단5015389 판결)에서 법원은 수술 후 불가피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9. 1. 2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2019. 3. 22. 하악절제술, 이마축소술, 실리프팅수술, 안면지방이식술, 눈밑지방재배치술, 피부관리 등을 받았다. 현재 환자는 이마와 두피 경계 부위에 가로로 길게 걸친 너비 약 3mm, 길이 약 19cm의 선상반흔이 남아 있고 위 흉터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탈모 증상이 나타나 있다.

원고는 현재 남아있는 이마 부위 흉터는 이마축소술로 인한 일반적인 흉터와는 다르게 심한정도의 흉터이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마축소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스듬하게 두피 절개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지혈을 하는 등 부적절하게 절개 및 봉합을 하여 이마 부위에 광범위한 흉터가 남았으므로 수술 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당 법무법인은 이마축소술은 수술 과정 상 광범위한 흉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현재 흉터는 이마축소술 후 발생하는 통상적인 정도의 흉터이고, 의료진은 수술 후 흉터를 머리카락으로 가릴 수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잔머리 모발선 안쪽으로 절개하고 긴장 없이 모발선을 따라 봉합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술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당 법무법인은 수술 전 이마축소술 후 흉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상세히 설명 후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마축소술 후 수술 과정에서 절개 부위에 흉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한 수술내용 자체에 예정되어 있는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정도의 흉터상태이고 의료진이 수술 중 과도한 지혈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수술 후 원고에게 흉터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에게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진료기록부 및 동의서 상 흉터, 탈모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측 설명의무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 판결을 통해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종래의 확립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료기록과 동의서 상 의료행위 과정과 관련한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 성실히 기재되어있는 경우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의료소송에 있어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다뤄야 할 것이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 전 의료행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후 성실히 진료기록부 및 동의서에 기재하여 적절히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변호사/의사

TEL. 02 565 9801

E-mail. jmhong@lkpartner.co.kr